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104364 손해배상(지)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제윤, 박선우
피 고 1. 대한민국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희
변 론 종 결 2026. 5. 12.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1. 피고들은 별지 제2항 기재 음원 파일, 별지 제3항 기재 악보를 폐기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부터 2026. 6. 18.까지 연 5%, 2026.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C에서 'D' 중 원고의 음악저작물 [E]를 이용하는 화면을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복제·배포·방송·전송·공연 및 이를 위하여 이용자들이 검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 제1항 기재 'D' 팸플릿을 폐기하고, 원고에게 공동하여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일간지에 게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작곡한 'E'라는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69% 지분을 상속한 사람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G의 설치·운영 주체이다.

나. 피고 B는 2023. 7. 25. G와 체결한 편곡계약(이하 '이 사건 편곡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편곡하여 국악관현악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편곡저작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23. 11. 2. H에서 'D'를 개최하고, 이 사건 편곡저작물을 실연자인 I을 통하여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편곡저작물 작성 및 이 사건 공연 과정에서 원고 등 저작권자인 원자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 등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편곡하여 이 사건 편곡저작물을 작성하고 이 사건 공연을 함으로써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편곡저작물의 악보, 음원 파일, 팸플릿에 망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 그 성명표시권도 침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화면의 제거 등 침해 정지 및 별지 각 항 기재 팸플릿, 음원 파일, 악보의 폐기를 구하고,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그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일부 청구), 저작권법 제127조, 제128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일간지에 게재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등 저작권자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원고 등과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편곡저작물을 작성하여 이 사건 공연을 진행한 것일 뿐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고의로 침해한 것이 아니다.



2) 피고 B는 G의 의뢰로 이 사건 편곡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편곡저작물을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편곡저작물을 작성하고 이 사건 공연을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편곡저작물은 원저작물인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선율, 악곡 구조 등 창작적 표현을 기초로 국악관현악 형태로 편곡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저작권법 제5조 제2항),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인 원고 등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성명표시권은 저작자인 망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므로(저작권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망인의 사망으로 이미 소멸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침해 정지 및 폐기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화면의 제거 등 침해 정지 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C에서 'D' 중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화면을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복제·배포·방송·전송·공연 및 이를 위하여 이용자들이 검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침해 정지 또는 예방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 침해행위의 발생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예견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현재 C에서 'D' 중 이 사건 음악저작물 또는 이 사건 편곡저작물을 이용하는 화면이 게시되어 있다거나, 이를 이용자들이 검색·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침해 정지 청구는 이유 없다.

2) 별지 각 항 기재 팸플릿, 음원 파일, 악보에 대한 폐기 청구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침해 정지 등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물이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이거나 침해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폐기가 필요한 물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먼저 이 사건 공연의 팸플릿인 별지 제1항 기재 팸플릿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위 팸플릿에는 이 사건 공연의 일시·장소, 출연자, 공연 프로그램 등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악보, 가사, 선율 등 창작적 표현 자체가 수록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편곡저작물 자체가 공개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제목 또는 공연 순서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팸플릿 자체가 이 사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폐기 청구는 이유 없다.



반면, 별지 제2항 기재 음원 파일 및 별지 제3항 기재 악보는 이 사건 편곡저작물의 음원 파일 및 악보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편곡하여 작성된 이 사건 편곡저작물을 고정하거나 표현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 또는 그 침해상태를 계속하여 초래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항 기재 음원 파일 및 별지 제3항 기재 악보를 폐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폐기 청구는 이유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G을 통하여 이 사건 공연을 기획·진행하면서, 원고 등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고 B로 하여금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편곡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편곡저작물을 이 사건 공연에서 공중에게 공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연 전 원고 등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그 침해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공연으로 나아갔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그 침해행위의 고의나 위법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편곡저작물을 공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인 원고 등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가 피고 대한민국이 설치·운영하는 G과 체결한 이 사건 편곡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편곡하여 이 사건 편곡저작물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편곡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이 설치·운영하는 G이 이 사건 공연을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편곡을 의뢰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공연의 기획·제작, 공연 일정의 확정, 출연자 섭외, 공연장 운영, 홍보 및 이 사건 편곡저작물의 이용은 G에서 총괄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편곡계약은 피고 B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선정하여 편곡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 G이 기획한 이 사건 공연의 준비 과정에서 그 공연에 필요한 편곡물을 납품받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편곡계약 제8조 제4항에서는 "G이 예술가에게 원작의 각색(편곡)을 의뢰하는 경우, G은 원작자로부터 공연화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G에게 있다."고 규정하여, 원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을 의무가 원칙적으로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G 측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 B는 국가기관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연을 위한 편곡을 의뢰받았고, 위 계약조항 역시 원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을 의무를 G 측에 부담시키는 내용



이었으므로, 피고 B로서는 G이 원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그 이용허락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로 G 측은 이 사건 공연 전 J협회를 통하여 원고 등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그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 B가 위와 같은 이용허락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 B가 이 사건 편곡 저작물을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공연·복제·배포·전송하거나 별도로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의 적용 여부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이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되고(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도,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이 사건 공연에서 실연된 곡이 총 7곡인 점, 이 사건 공연을 기획·준비·홍보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등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공연으로 얻은 순이익 또는 한계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연의 판매대금 정산 자료(을 제11호증)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사단법인 J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갑 제10호증 참조), 이는 공연 사용료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징수 규정만으로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의 대가를 곧바로 산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 또는 이와 유사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종전에 체결한 이용허락계약의 내용, 통상적인 편곡 허락의 대가 산정 기준, 그 밖에 이 사건과 유사한 이용허락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충분히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사용료 징수규정만으로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2차적저작물작성을 위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 일반적으로 지급되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

이 사건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



정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연의 판매대금 정산 자료상 티켓 판매금액(매출액)은 13,438,000원인 점, ② 위 매출액에 사단법인 J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6조에 따른 공연사용료율 3%를 적용하면 403,140원이 되는 점, ③ 이 사건 공연은 이 사건 편곡저작물만을 단독으로 이용한 공연이 아니라 총 7곡으로 구성된 공연이므로, 전체 공연 사용료 상당액 403,140원을 7곡으로 균등하게 안분하면 이 사건 편곡저작물 1곡에 해당하는 금액은 57,591원이 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재산권 중 69%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57,591원에 원고의 지분비율 69%를 반영하면 39,738원이 되는 점, ⑤ 이 사건 공연은 1회 공연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당한 손해액은 4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인 2023. 11. 2.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6.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인 2026.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성명표시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그 저작자인 망인의 사망으로 이미 소멸하였다. 다만,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은 "저작



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8조는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23조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망인이 생존하였더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항 단서가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저작자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저작물 이용행위가 단순히 망인이 생존 중이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편곡저작물의 악보, 음원 파일 또는 팸플릿에 망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망인의 품성,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편곡저작물의 작성 및 이 사건 공연 과정에서 망인을 비



방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소개하였다거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내용·형식이 사회통념상 망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훼손·변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판사 이상수

판사 임성현



별지

1. 갑 제6호증 11월_프로그램 전단(앞), 갑제7호증
 11월_프로그램 전단(뒤)
2. 갑 제8호증 (편곡) MIDI_©국립국악관현악단,
MP3
3. 갑 제5호증 (편곡) -